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047

발의연월일: 2025. 3. 18.

발 의 자: 박정현·김남근·박홍배

문진석 • 이재정 • 김현정

이광희 • 이학영 • 조승래

신정훈 · 김동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재 영국, 프랑스,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 담하고 있으며,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 하고 있음.

반면,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해왔으나,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하였고, 박근혜 정부에서는 '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'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,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음.

마찬가지로 이번 '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' 와 관련해서도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검찰, 경찰 등 사법기 관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 실상 친위대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.

이에 해외 선진국과 같이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이관하고,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, 더 이상 경호기구가 대통령의 친위대 성격으로 운영되어 적법한 사법절차 방해 수단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정이라는 정체를 확립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관으로 변경하여 조직 설치 등의 규정을 법률의 목적에서 제외하도록 함(안 제1조).
- 나.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를 두도록 함 (안 제3조).
- 다. 경호구역 내 경호대상 외의 사람이 있는 경우에 적법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의3 신설).
- 라.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근거와 임용 및 직무 권한 등의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폐지함(안 제6조부 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삭제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

안」(의안번호 제9049호),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045호), 「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04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경호의 조직·직무범위"를 "경호 업무의 직무범위"로 한다. 제2조제3호 중 "대통령경호처(이하 "경호처"라 한다)"를 "대통령경호 본부(이하 "경호본부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경호처"를 "경호본부"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대통령경호본부) ① 이 법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호본부를 둔다.

② 그 밖에 경호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경호처"를 "경호본부"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처장"을 "경호본부의 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처장"을 "경호본부의 장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처장"을 "경호본부의 장"으로 한다.

제5조의2제2항 중 "처장"을 "경호본부의 장"으로 한다.

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3(경호구역에서의 안전조치) ① 경호본부의 장은 제5조제1항에

따른 경호구역에 경호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에 안전사고나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경호본부의 장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내용이나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호구역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9조제2항 중 "경호처"를 "경호본부"로 한다.

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5조 중 "처장"을 "경호본부의 장"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경호처"를 "경호본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"을 "위원장 1명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차장"을 "경호본부의 장"으로 한다.

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를 삭제한다.

제21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경찰청은 이 법 시행 전에 경호 업무 승계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처장은 경찰청에 협 조하여야 한다.
- 제3조(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처장의 소관 사무는 경호본부의 장이 승계한다.
 - ② 이 법 시행 당시 경호처 소속공무원(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)은 경찰공무원으로 본다.
- 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(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)에서 "대통령경호처"를 인용한 경우에는 "경찰청"을, "대통령경호처의 장"을 인용한 경우에는 "대통령경호본부의 장"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대통령 등에	제1조(목적)
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	
하기 위하여 <u>경호의 조직·직</u>	<u>경호 업무의 직무</u>
<u>무범위</u> 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	범위
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·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"소속공무원"이란 <u>대통령경</u>	3대통령
호처(이하 "경호처"라 한다)	경호본부(이하 "경호본부"라
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	<u>한다)</u>
을 말한다.	
4. "관계기관"이란 <u>경호처</u> 가 경	4 <u></u> 경호본부-
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	
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	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을	
말한다.	<u>.</u>
제3조(대통령경호처장 등) ① 대	제3조(대통령경호본부) ① 이 법
통령경호처장(이하 "처장"이라	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
한다)은 대통령이 임명하고, 경	위하여 경찰청에 경호본부를
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	<u> 둔다.</u>
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	② 그 밖에 경호본부의 운영
② 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.	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

- ③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
 통령령으로 정한다.

 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

 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,

 처장을 보좌한다.
- 제4조(경호대상) ① <u>경호처</u>의 경 호대상은 다음과 같다.
 - 1. ~ 5. (생략)
 - 6. 그 밖에 <u>처장</u>이 경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(要人)
 - ② (생략)
 -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<u>처장</u>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 할 수 있다.
- 제5조(경호구역의 지정 등) ① <u>처</u> <u>장</u>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 역을 지정할 수 있다.
 - ②·③ (생 략)
- 제5조의2(다자간 정상회의의 경 호 및 안전관리) ① (생 략)

제4조(경호대상) ① <u>경호본부</u>
 1. ~ 5. (현행과 같음) 6 <u>경호본부의 장</u>
<u>경호본부의 장</u>
제5조(경호구역의 지정 등) ① <u>경</u> 호본부의 <u>장</u>
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5조의2(다자간 정상회의의 경

호 및 안전관리) ① (현행과 같

음)

- ② 경호·안전 대책기구의 장 ② ------은 처장이 된다.
- ③ ~ ⑤ (생 략) <신 설>

제6조(직원) ① 경호처에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 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 공무원을 둔다. 다만,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 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 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

- -경호본부의 장-----.
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 제5조의3(경호구역에서의 안전조 치) ① 경호본부의 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에 경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 에 안전사고나 테러 위협 등으 로부터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를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경호본부의 장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때 에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 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내용이나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호구역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② 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 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
제7조(임용권자) ① 5급 이상 경 <삭 제> 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 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제 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. 다 만, 전보·휴직·겸임·파견· 직위해제·정직(停職) 및 복직 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한다. ② 처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 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.

③ 삭제

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 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 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 의6제3항을 준용한다.

제8조(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 사유)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 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 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

용될 수 없다.

- 1.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-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

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 사람
- ③ 제2항 각 호(「국가공무원 법」 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)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은 당연히 퇴직한다.

제9조(비밀의 엄수) ① (생 략)

- ② 소속공무원은 <u>경호처</u>의 직 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 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 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다.
- 제10조(직권면직) ① 임용권자는 직원(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 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.
 - 1. 신체적・정신적 이상으로 6

 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

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

같음)
② <u>경호본부</u>
<삭 제>

제9조(비밀의 엄수) ① (현행과

- 2.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
- 3. 직제와 정원의 개폐(改廢)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(廢職) 또는 과원(過員)이 된 때
- 4.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- 5.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 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 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 인정될 때
- 6.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 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수 없게 되었을 때
- ② 제1항제2호·제5호에 해당

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 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면 직하는 경우에는 임용 형태, 업 무실적, 직무 수행 능력, 징계 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기면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

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 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 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야 한다.

<u>제11조(정년) ① 경호공무원의 정</u> <u>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.</u>

1. 연령정년

<u>가. 5급 이상: 58세</u>

<u>나. 6급 이하: 55세</u>

<u>2. 계급정년</u>

<u>가. 2급: 4년</u>

나. 3급: 7년

다. 4급: 12년

라. 5급: 16년

- ② 경호공무원이 강임(降任)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 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 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 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.
-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(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 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- 1.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 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 다. 다만, 1급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 가목의 계급정년으로 한다.
- 2.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
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
 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
 합산한다.
- ④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

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 다.

 제12조(징계)
 ① 직원의 징계에

 관한
 사항을
 심사・의결하기

 위하여
 경호처에
 고등징계위원

 회와
 보통징계위원회를
 둔다.

-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. 다만,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한다.
-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보상) 직원으로서 제4조제 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 하여 상이(傷痍)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(상이 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 한다)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
<삭 제>

따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보상을 한다.

제14조(「국가공무원법」과의 관계 등) ① 직원의 신규채용, 시험의 실시, 승진, 근무성적평정,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「국가공무원법」을 준용한다.
- ③ 직원에 대하여는 「국가공 무원법」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15조(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기요청) <u>처장</u>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6조(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 제16조(대통령 7회)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 회) ① -----

제15조(국가기관	등에	대한	협조
요청)	경호본투	브의 경	<u>}</u>	
,				
제16조(대통령경	호안?	전대책	위원
-1\				

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 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 을 명확하게 하고, 협조를 원활 하게 하기 위하여 <u>경호처</u>에 대 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<u>위원장과 부위원</u><u>장 각 1명</u>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<u>처장이 되고, 부위</u> 원장은 <u>차장</u>이 되며, 위원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.
- ④·⑤ (생 략)

제17조(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)

① 경호공무원(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(司法警察官吏)의 직무를수행할 수 있다.

<u>경호본부</u>
②위원장 1명
③ <u>경호본부의 장</u>
④·⑤ (현행과 같음)
<u><삭 제></u>

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 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 를 수행하고, 8급 이하 경호공 무원은 사법경찰리(司法警察吏) 의 직무를 수행한다.

제18조(직권 남용 금지 등) ① 소 | <삭 제> 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.

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 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 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.

제19조(무기의 휴대 및 사용)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 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 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 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 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 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 용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

끼쳐서는 아니 된다.

- 1. 「형법」 제21조 및 제22조 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에 해당할 때
- 2.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 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 죄로 사형, 무기 또는 장기 3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 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 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 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 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 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 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
- 3.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

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 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

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(손실보상) ① 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 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- 1.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 •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(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무원 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 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 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)
- 2.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 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 여 입은 생명 · 신체 또는 재

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<삭 제>

산상의 손실

-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,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 멸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를 둔다.
- ④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.
- 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 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 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 수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(벌칙) ① 제9조제1항, 제1 <삭 제>

8조또는제19조제2항을위반한사람은5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.

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·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